

2026년도 연구선·과학기술지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정기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1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및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8조(공동활용 신청 및 승인),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의 관리와 공동활용 지원 지침」 제9조(연구선·과학기술지 공동활용 지원자 선정 등)에 따라, “2026년도 연구선·과학기술지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규과제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9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목적) 연구선 및 과학기지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여 연구자의 현장 연구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선진사례를 반영한 기관별 연구인프라 책임운영 체계에 공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양수산 연구인프라의 대외 개방률 확대
- (사업내용) 연구선·과학기술지 사용기회 제공과 인프라 사용료 및 활용 부대비용 지원
- (공모과제)
 - 공모형 연구과제(신규)

연구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당해 연구개발기간)	지원내용	당해 지원금 규모** (선정규모)	비고
해양수산 연구선·과학기술지 활용연구(자유주제)	3년 이내 (9개월 이내)	활용부대비용***	40백만원 이내 (5개 내외)	비R&D사업/ 3책5공 미적용

※ 인프라 사용료는 KIMST가 인프라 보유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 9개월 이내로 함
- ** 연구개발기간 및 지원금(활용부대비용)은 정부예산 상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활용부대비용 지원항목: 상세내용 [붙임1]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금 계상 및 사용 세부기준 참고
- 직접비
 - ① 연구시설장비비(장비 구매 불가, 대여 가능)
 - ② 연구재료비
 - ③ 연구활동비(연구선·기지 사용료 제외)
- 간접비(직접비의 5% 이내), 인건비(지원범위에서 제외함)

2. 지원내용

□ (대상 인프라) 연구선 6척 및 해양과학기지 4개소 총 10종

연구선 6척			과학기지 4개소	
				
이사부호	온누리호	아라온호	태평양 과학기지	웅진소청초 과학기지
				
독도누리호	장목1호	장목2호	한인니 과학기지	남극 세종 과학기지

□ (인프라 공동활용 조건) 인프라별 운항해역 및 활용가능일정, 최대 체류가능 일수, 최대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연구계획서 작성

연구선					
No.	인프라명	운항해역	활용 가능일정 (단독활용)	최대수용 인원	숙박가능 여부
1	이사부호	한국-인도양 이동	2026.3.25.~4.14. (3일 이내)	10명	○
		인도양	2026.5.20.~6.16. (3일 이내)	5명	
		인도양-한국 이동	2026.6.19.~7.4. (3일 이내)	10명	
		북서태평양 (장목항~괌)	2026.8월~12월 (별도협의필요)	5명	

2	온누리호	동해	연중 (별도협의필요)	5명	○
		서해	연중 (별도협의필요)	5명	
3	아라온호	2026/27년 남극항해 (이동항차)	2026.10.30.~11.19. (별도협의필요)	10명	○
		2026/27년 남극항해 (1항차)	2026.11.19.~12.22. (별도협의필요)	3명	
		2026/27년 남극항해 (2항차)	2026.12.22.~2027.2.23. (별도협의필요)	2명	
4	장목1호	동해(거제~포항)	연중 (별도협의필요)	11명	×
		남해(거제~완도)	연중 (별도협의필요)	11명	
5	장목2호	동해(죽변~포항, 죽변~속초)	연중 (별도협의필요)	8명	×
		울릉도(죽변~울릉)	연중 (별도협의필요)	8명	
6	독도누리호	울릉도 연안	연중 (별도협의필요)	15명	×
		울릉~독도	연중 (별도협의필요)	15명	

과학기지

No.	인프라명	위치	활용가능일정 (최대 체류가능일수)	최대수용 인원	숙박가능 여부
1	남극세종 과학기지	남극 남셰틀랜드 군도 킹조지섬	2026.12.1.~2027.2.28. (21일 이내)	8명	○
2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인천 옹진군 소청도	입도지원기관과 일정 조율 (7일 이내/1회)	5명 이내 (협의필요)	○
3	태평양 축 과학기지	미크로네시아 추크주	연중 상시 (1개월 이내, 별도협의필요)	10명	○
4	한·인니 과학기지	인도네시아 치르본	연중 상시 (1개월 이내, 별도협의필요)	20명	×

※ 인프라별 승선 인원, 운항 해역 및 활용 가능 일정은 기상 상황과 인프라 운영 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인프라 상세정보(인프라 현황, 운항 해역, 항적도, 운항 일정, 활용 가능 장비, 기타 공동활용 조건 등) **[붙임4]** 및 **바다봄 시스템** 참고

□ (인프라 활용 유의사항) 인프라별 안전·유의사항 및 기타 공동활용 조건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인프라 활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연구선)

- 연구선 안전운항을 위해 모든 연구선에 승선하는 연구자는 연구선 운영 기관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남극해(아라온호) 승선연구자는 적합한 건강검진 결과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선박 관련 법규와 연구선 생활규칙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연구자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프라 보유기관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연구선 내 설치된 연구장비의 운영은 연구자가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사부호, 아라온호 제외)
- 연구책임자는 승선 연구과정에서의 돌발상황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현장책임자를 승선 인원 중 반드시 지정하여야 함
- 해양과학조사법(6조~8조, 20조)에 따른 외국인과의 공동조사, 국내·외 영해·EEZ 및 공해상의 조사를 위한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의 책임과 의무는 연구자에게 있음.
- 기타 선박 운영 과정에서 연구자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으며, 해당 사유로 연구과제가 취소될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남극 세종 과학기지)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남극활동 허가신청서를 외교부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할 의무는 연구자에게 있음(단, 신청서는 극지연구소에서 취합 후 일괄 발송함)
- 극지 활동 시행 전 극지 안전훈련 및 건강적합성 판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용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 용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연구팀의 입도 인원 전원은 해양과학기지 체류자 기초안전교육(해양수산연수원)을 이수하고, 용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입도 전 유효기간 이내(교육일로부터 2년) 교육 수료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체류자 기초안전교육 '26년 수요조사 예정
- 용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지원자가 보유 또는 임차한 연구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활용 지원 시 제출한 장비 외에 추가나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신청하고 최종여부는 국립해양조사원의 협의를 통해 확정
 - * 해양과학기지의 안정적인 전력운영에 따른 사용장비의 총 전력사용량을 제한 (최대 부하 5kW이하), 사용전압(220V) 이외의 장비사용 시 별도의 변압기 필요
- 지원자는 연구에 필요한 물품(시료 채수기, 시약 등)과 해양과학기지 체류에 필요한 물품(침구류, 개인 세면도구 등)은 직접 구비하여야 함
- 개인실험실 및 1인1실 숙식은 제공되지 않으며, 숙식은 8명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함
- 용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의 체류여건 및 장비운영은 해양과학기지 유지관리사업 수행사의 지도하에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음주 및 낚시 등 개인 취미활동은 일체 불가하며, 기타 해양과학기지 이용 중 지원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국립해양조사원의 손해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책임을 지며, 이로인해 연구과제가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원자는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과학기지 관리·운영규정 별표1의 체류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함

○ (태평양 해양과학기지)

- 연구활동에 대한 태평양 해양과학기지(KSORC, Korea·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및 미크로네시아 축주 정부(Chuuk State Government)와 사전 조율이 필요함
- 연구결과 데이터는 반드시 KSORC와 미크로네시아 축주 정부와

- 공유하여야 하며, 연말 연구결과 보고서(요약본)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결과를 활용한 논문 작성 시, KSORC와 미크로네시아 측주 정부 수산국(Department of Marine Resource)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휴일 외부연구 활동 시, 사전협조 필요함(직원 휴일 추가 인건비 발생)
- (한·인니 해양과학기지 활용 유의사항)
- 연구활동에 대한 사전 허가(최소 2~3개월 소요)를 받아야하며, 민감한 연구내용 포함시 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 ※ 인도네시아 정부 연구 허가 수수료 최대 600,000원 추가 발생
 - 숙식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연구자는 해양과학기지 인근에서 개별적으로 숙식을 해결해야 함
 - 연구결과 데이터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공유하여야 하며, 연구성과를 활용한 논문 발표 시 사사(Acknowledgemnet)란에 'MTCRC(Korea-Indonesia Marine Technology Cooperation Research Center)'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신청서 접수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일 경우, 신청불가

※ 연구선 운영 재원 확보가 어려운 기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선 보유기관 (KIOST 및 KOPRI), 국립해양조사원 연구자 및 공고일 기준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사업 계속 수행 중인 연구자는 신청 불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4.~9. (생략)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② (생략)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국립·공립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6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5. 「지방자치법」 제126조 또는 제12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6.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4. 신청방법 및 절차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6. 1. 19.(월) ~ 2. 20.(금)
- (접수기간) : '26. 1. 19.(월) ~ 2. 20.(금) 16:00까지
 - * 접수기간 이후에 도착하는 서류는 반려되니, 반드시 접수기한 엄수 요망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바다봄시스템(<https://badadom.go.kr>)에 접속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① [대메뉴] 공동활용→[중메뉴]인프라→[소메뉴]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 선택
 - ② 활용 희망 인프라 1개 선택 (이사부호, 온누리호, 장목1·2호, 아라온호, 남극세종기지, 웅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태평양 측 과학기지, 한·인니 과학기지 중 택1)
 - ③ 사용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등록
 - ④ 공문 제출(신청서류 포함)
 - ※ 바다봄 시스템을 통해 작성한 신청서류는 반드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신청이 완료됨
 - ※ 신청 공문(직인 필수)과 신청서(제출서류)는 접수기간 내에 공문 제출해야 함

< 바다봄시스템 사용 신청 방법 >

- ① 바다봄(<https://badabom.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②[대메뉴]공동활용[중메뉴]인프라[소메뉴]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지원 → ③활용 희망 인프라 선택 → ④신청서 작성 메뉴 선택 → ⑤신청인 정보/책임자 정보 입력 → ⑥연구과제정보 입력(연구과제명 기입) → ⑦승선인원 정보 등록(연구선 선택시) → ⑧ 조사희망 해역 입력(연구선 선택시; 지도에서 선택하여 복수일정 입력 가능) → ⑨인프라 보유장비 또는 개인보유 장비 활용계획 작성 → ⑩신청서류 업로드(신청공문, 연구계획서(별첨포함), 사업자등록증, 국가연구개발(R&D) 참여제한여부 확인서 → ⑪저장 및 신청서 등록(바다봄 시스템)
- ※ 바다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신청 가이드'를 참고하여 신청 요망. '공동활용 신청 완료' 화면 확인 후, '내정보보기→나의글→공동활용신청'에서 지원신청 현황 반드시 확인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공통) 연구과제는 공동활용 희망 인프라를 1개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연구선) '연구선 사용료'에 대해서는 KIMST에서 인프라 보유기관에 실제 사용료를 일괄 지급함에 따라 공동활용 지원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지원금 계상 내역에 '연구선 사용료' 포함하지 않음
- (과학기술지) 과학기지 활용 시 발생하는 비용일체(숙식비 및 장비·시설(선박포함) 사용료 등) 포함하여 지원금 계상 내역작성
 ※ 연구선·과학기술지 공동활용 지원금 계상 및 사용 세부기준 [붙임1] 참고

□ 제출서류

No	신청 서류	비 고
1	신청 공문(직인 필수) 1부	필수
2	연구선·과학기술지 공동활용 연구계획서(해당 별첨서류 포함) 1부 - [별첨1]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별첨2~4] 인프라 사용신청서 - [별첨5]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활용 서약서 - [별첨6] 기업 재무건전성 현황(신청기관이 기업일 경우)	필수
3	국가연구개발(R&D)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 ※ www.ntis.go.kr→'MY제재정보확인' 결과화면 캡처	필수
4	사업자 등록증 1부	필수

5. 선정기준 및 절차

- (근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해양수산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인프라 관리 및 활용지원 지침 제9조(연구선 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자 선정 등)
- (선정방법) 전문기관과 인프라 보유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아래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평가하여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구분	기준	비 고
서류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책임자 및 승선(입도) 연구원 참여제한 여부 연구선과학기지 활용조건의 부합성 제출서류 적정성 기타 기재사항 누락 등 필요한 사항 	수정보완 요청 및 반려
선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활용 연구목적 및 내용의 필요성 공동활용을 통한 예상성과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 공동활용 지원금 규모의 적정성 등 	평가결과 (선정/미선정)안내

※ 서류검토 결과 연구선 과학기지 활용 조건을 충족하고, 신청과제의 규모가 공동활용 지원 가능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선정평가를 생략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할 수 있음

□ (선정 및 지원 절차)

절 차	내 용	일정
공고·접수	• KIMST 홈페이지 및 바다봄 시스템 공모 및 접수	1~2월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신청조건의 적정성 등 확인	2월
선정평가	•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2월
지원대상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대상 확정 * 지원 기관별로 통보하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2~3월
인프라 세부활용 조건확정 (KIOST, KOPRI, KHO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시 선정과제별 인프라 활용 세부조건(일정, 수용인원, 사용조건 등) 검토·확정 ※ 선정과제 연구책임자가 공동활용 조건 등의 사유로 인프라 이용을 포기하거나 선정제외 될 경우, 후보군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3월
협약체결 (KIM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평가 수정·보완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고 협약체결 진행 ※ 단, 협약체결 시 인프라 보유기관-수행기관은 인프라 운영조건 관련 별도 합의서 작성 	3월
지원금 지급	• 연구선 및 과학기지 활용 부대비용 지급(KIMST→연구기관)	3월
지원금 정산 및 성과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프라 활용 부대경비 지원금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 본사업으로 창출된 성과(논문, 학술발표, 보고서) 등록 	12월

※ 신규과제 접수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절차 및 일정 변동 가능

6. 유의사항

- 신청 서류의 해당 부분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며, 신청서 기재 내용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 서류검토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 및 협약 해약 처리
- * 제출된 서류와 전산 입력 서류가 상이하거나, 관련 서류를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마감시간까지 전산 접수가 완료되지 않거나 신청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 본 공모에 대한 신청은 무효 처리됨
-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서 연구자가 신청한 선박 사용 일정과 승선 인원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사항 수용 불가 시 과제가 취소될 수 있음
- 연구자가 제안한 총 연구비 및 연구비 비목별 편성은 선정평가를 통해 적정성 검토 후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자는 해양수산 연구개발 정보 및 연구인프라 공동 활용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의 서약서 [별첨6]을 제출·준수해야 함
- 지원대상자가 교육지원 절차 및 연구선·과학기지 운영기준 미 준수 또는 승선자 과실발생 등 사업운영 조건 위반 또는 사고발생 시 향후 3년 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는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을 통해 창출된 성과(논문, 학술발표, 보고서 등)를 발표하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았음을 사사(Acknowledgement)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지원 종료 후 5년간 매년 11월 말까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성과를 KIMST에 제출하여야 함

<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사업 사사 문구 >

- (국문) 연구선 0000호(0000 과학기지)는 해양수산부의 재원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이 운영하는 ‘해양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 (영문) The research vessel 0000((The research base, 0000) was provided through the ‘Ocean Research Facility and Equipment share Program of the Korea Institute of Marine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KIMST), fund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Korea.

- 연구자는 공동활용 연구를 통해 확보한 연구데이터는 바다봄 지식정보 시스템(badabom.go.kr)에 공개 필수(단, 비공개 시 사유 제시)
* 생산된 데이터는 바다봄 지식정보 시스템(badabom.go.kr)에 성과등록 시 업로드
-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 기술정보의 관리와 공동활용 지원 지침*」에 따라 처리함
* 우리원 ‘홈페이지-자료집-법규/서식/매뉴얼’에서 확인 가능함

7.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프라공유실	안영주 선임연구원	02-3460-9803 ahn0709@kimst.re.kr

- [붙임 1]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연구계획서 1부
- [붙임 2] 연구선 및 과학기지 선정평가서 양식 1부
- [붙임 3]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협약서 양식 1부
- [붙임 4] 연구선 항적도 및 인프라 보유 장비 현황 1부

[당해연도 정부 지원금 계상 세부 내역]

(단위 : 원)

비목(항목)	세부내역	지원금	소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장비 임차비	0000	0000
	연구장비 이송비	0000	
연구재료비	연구재료 구입1		
	연구재료 구입2		
연구활동비(출장비)	00명 국내출장		
	00명 국외출장		
연구활동비(그 외 연구활동비)	비자발급 수수료		
	시료분석 의뢰		
간접비 (비 영리기관은 집행액만 작성)	연구지원 기관 공통비(영리기관만 작성)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영리기관만 작성)		
합계			

【참고】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금 계상 및 사용 세부기준

1. 직접비

항 목	사용 세부기준
가. 연구시설·장비비	1)연구시설·장비 설치비 :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설치비, 관련 부대비용 2)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나. 연구재료비	연구재료 구입비 :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시약·재료 구입비
다. 연구활동비	1)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소속기관 이외 국내외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활용비 (원고료, 자문료 등) 2)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숙박료, 통역료, 회의비, 세미나 개최 비용 3)출장비 :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비 4)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야근(특근) 식대 5)그 밖의 비용: 연구선·과학기지 활용을 위한 수수료(사용료, 입국 수속비 등), 승선자 보험료, 시료 분석비 등 연구선·과학기지 활용과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2. 간접비(직접비의 5%이내에서 계상, 증액 불가)

항 목	사용 세부기준
가. 인력지원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나. 연구지원비	<p>1)기관 공통 비용: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p> <p>2)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과제 관련 기반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p> <p>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p> <p>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p> <p>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p> <p>3)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p> <p>3의2)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p> <p>4)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p> <p>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p> <p>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p> <p>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p> <p>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p> <p>5)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 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 활동 비용</p> <p>6)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p>
다. 성과활용 지원비	<p>1)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p> <p>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p> <p>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p> <p>다) 홍보전문가 양성</p> <p>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p> <p>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p> <p>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p> <p>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p> <p>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p> <p>라)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p>

[별첨1]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공동활용 과제번호	시스템 자동부여		
연구주제명			
소속기관		연구책임자 성명	
전체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를 중요시하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1조, 제1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수집·이용 목적

- 참여제한 및 기타 인프라 공동활용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 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보고서 제출, 성과조사 및 평가 관리
-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 평가위원 선정 시 피평가자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원 등) 여부의 확인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연구원의 지원금 사용·정산 및 관리
- 연구개발정보의 검증

□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주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 하단 「작성자 정보」 ①번 항목에 동의 여부 기재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 참여제한 및 기타 인프라 공동활용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피평가자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원 등) 여부의 확인

□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국가연구자번호

□ 고유식별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하단 「작성자 정보」 ②번 항목에 동의 여부 기재

[별첨2] 연구선 사용신청서(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연구선 사용신청서					
연구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활용 희망 연구선명					
사용 기간(안) YYYY. MM. DD - YYYY. MM. DD					
조사해역(지역)	국내	한중/한일 잠정조치수역 조사 여부	○/×		
		외국인 승선 여부	○/×		
	국외	외국 관할해역 내 조사 여부	○/× (해당국가)		
<i>상세해역은 조사내용 및 정점(좌표) 혹은 구역으로 표기</i>					
조사내용 (개괄적 내용 작성, 상세내용은 '별지' 작성)					
조사내용	조사해역(지역)	조사일자	조사내용·항목	단독활용일수	
	<i>공고문을 참고하여 정점(좌표), 해역명 표기 ex) 123°12.12'E(해역명)</i>				
	조사 시 필수사항	<i>관측간격, 수심, 샘플 및 데이터 처리 등 조사자료 획득에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사항 기재 *정점별 조사내용이 상이할 경우 별도 작성(정점별 조사 상세내용 양식참조)</i>			
사용 필요 장비	승선자 보유 시설·장비 (승선 또는 비 승선 시 탑재장비)	기기명	용도	비고	
	<i>탈착가능여부 등 특이사항</i>				
	연구선 보유 시설·장비	기기명	용도	비고	
	<i>과제공고문 첨부 참고</i>				
	헬리콥터	사용여부 ○/×	사용기간 YYYY.MM.DD - YYYY.MM.DD	목적	비고
승선인원 (승선연구 시 작성)	성 명	국적	소속(직급)	성별	연락처(핸드폰)
	홍길동	<i>이중국적의 경우 전부기입</i>		남/여	
타국 EEZ내 조사여부	해당여부 ○/×	해당국가	활동 기간 YYYY.MM.DD - YYYY.MM.DD	수행내용	
추가 요청사항					

위와 같이 연구선 공동활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직인)

000원(소)장 귀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첨3] 해양과학기지 공동활용 신청서(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해양과학기지 사용신청서										
연구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활용 희망 과학기지										
입출입 계획	과학기지 입도일시				과학기지 출도일시					
	YYYY. MM. DD				YYYY. MM. DD					
선적화물 (연구장비 및 보급품)	화물내용	수량	단위	순중량(kg)	총중량(kg)	가로(cm)	세로(cm)	높이(cm)	부피(CBM)	
	연구장비	2	BOX	90	100	100	50	50	0.5	
	연구소모품	1	EA							
	연구소모품	2	BOX							
선적화물 특이사항 기재										
조사내용	조사내용 (개괄적 내용 작성, 상세내역 별도 작성)									
	조사일자	조사내용·항목								
	조사 시 필수사항	샘플 및 데이터 처리 등 조사자료 획득에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사항 기재								
사용필요장비	연구자 보유 연구장비	기기명			용도			비고		
								탈착가능여부 등 특이사항		
	과학기지 보유 연구장비	기기명			용도			비고		
	소형선박 및 고무보트	사용여부	사용기간			목적				
		O/X	YYYY.MM.DD - YYYY.MM.DD							
		목적지	다이빙 여부			활용장비	계속사용여부			
		아들리섬	O/X			CTD	O/X			
기타 요청사항		최소 주 1회 반드시 사용 등								
기지 입도인원	성명	국적	소속(직급)			성별	연락처(핸드폰)			
		이중국적의 경우 전부기입				남/여				
추가 요청사항										

위와 같이 해양과학기지 공동활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직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 극지연구소장 귀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첨4]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신청서(국립해양조사원 소청초 기지 활용자 한함)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대 상	구 분	조위관측소[] 해수유동관측소[] 해양관측소[] 종합해양과학기지[√] 해양관측부이[] 기타[]	관측소 명칭	응진 소청초 과학기지		
출 입 허 가 신 청	출입 목적					
	출입 기간					
	이용 시설					
	안전 대책					
출 입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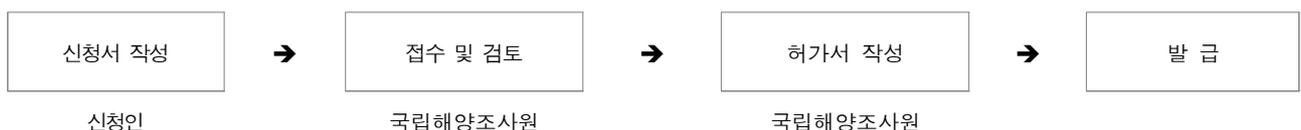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첨부서류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별첨5]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활용 서약서

서 약 서

1. 연구시설·장비 사용 전·후 점검을 통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
 2.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사용 신청서 및 사용계획서에 기록한 항목 준수
 3. 사용한 연구시설·장비가 손실된 경우 같은 장비 구매 납품 이행
 5. 사용한 연구시설·장비가 파손 및 고장이 발생한 경우 원상 복구 이행
 6.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한 성과(지식재산권, 국내외 학술지 논문,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자료에 사사를 명확히 기재
 - (국문) 연구선 0000호(0000 과학기지)는 해양수산부의 재원으로 해양수산과 학기술진흥원(KIMST)이 운영하는 '해양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 (영문) The research vessel 0000((The research base, 0000) was provided through the 'Ocean Research Facility and Equipment share Program of the Korea Institute of Marine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KIMST), fund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Korea.
- *지식재산권의 경우 출원서의 기타사항에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사업 (공동활용 과제번호, 연도)” 표기
7. 연구시설·장비 사용 중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장비고장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8. 그 밖의 에 대한 모든 책임 사용 등에 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관련 고시 및 해석에 따름

해양수산 연구인프라를 활용함에 있어 위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첨6] 기업 재무건전성 현황

기업 재무건전성 현황(신청기관이 기업인 경우만 작성)

① 기업명 : ○○○○

② 연구책임자 :

항 목	해당사항기재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 (산식: 부채총계/자기자본총계×100)	○ 계산결과 : ○○% ○ 계산식 및 수치기재		
최근 결산 기준 유동비율 (산식: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계산결과 : ○○% ○ 계산식 및 수치기재		
최근 결산 기준 이자보상비율 (산식: 영업이익/이자비용)	○ 계산결과 : ○○% ○ 계산식 및 수치기재		
3개년도 계속 적자 기업 (kisline 등 증빙가능한 자료 활용) (판단기준: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 (손실)로서 판단)	○		
	20 년	20 년	20 년
	(수치기재)	(수치기재)	(수치기재)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 여부 또는 법정관리, 화의기업 여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여부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여부	○		
4대 보험을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연체 횟수가 연간 2회 이상인 여부	○		
체불 임금이 2개월 이상 여부	○		
기타 특이사항	○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증빙 서류 제출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입

연구선·과학기지 선정평가서

□ 과제 현황

공동활용 과제번호	시스템 자동부여		
연구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YYYY. MM. DD - YYYY. MM. DD		
총연구기간	연차	정부지원	
지원금 (천원, 해당시)	n차년도		
	:		
	계		

□ 평가일자: ○○○○. ○○. ○○.

I. 공동활용 연구 필요성

지원	지원 제외
○/×	
[지원 제외 사유] 지원 제외로 선택 시 반드시 사유(기존 연구과제 또는 연구기관 고유과제와 동일, 연구선·과학기지 운항(행) 일정과 불일치 등)를 기재	

II. 검토의견

□ 연구목표·내용, 성과활용 및 지원금 규모 등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

III. 평가위원 서명

소속 :	성명 :	(서명)
소속 :	성명 :	(서명)
소속 :	성명 :	(서명)
소속 :	성명 :	(서명)
소속 :	성명 :	(서명)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의 관리와 공동활용 지원 지침」(이하 “공동 활용 지침”) 및 기타 부속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연구계획서) 연구선·과학기지를 활용한 연구계획은 공동활용 지침 제1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연구계획서 및 첨부서류에 따른다.

제4조(전문기관의 권한과 의무)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2. 연구선·과학기지 사용료 및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3. 연구선·과학기지 사용료 및 부대경비 사용실적에 대한 점검
4. 연구선·과학기지 활용 연구의 점검 및 평가관리와 후속조치
5. 연구기관(연구책임자) 및 공동활용기관에게 연구선·과학기지 활용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
6. 연구선·과학기지 활용 연구의 연구성과 활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7. 연구개발정보의 수집, 관리 및 처리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5조(공동활용기관의 권한과 의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동활용기관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2. 연구자와 연구선·과학기지 활용일정 및 지원조건의 협의·조정·의사결정
3. 연구자의 연구선·과학기지 활용에 관한 지원 및 안전감독
4. 연구선·과학기지 사용에 따른 비용의 정산 및 청구
5. 연구선·과학기지 활용에 대한 자체 규정의 마련 및 운영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및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6조(연구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 주관연구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수행 총괄 및 공동활용 연구수행을 위한 지원
3. 연구계획서의 사전 검토·조정 및 작성 총괄
4. 연구선·과학기지 사용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총괄
5.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자의 확보 및 연구지원
6. 연구수행의 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총괄
7. 연구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결과 등 작성 총괄
8. 연구선·과학기지 활용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총괄

- 9.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전문기관에 보고
- 10. 그 밖에 법, 규칙, 규정 및 지침에서 주관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 또는 공동활용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자의 권리와 의무) ① 연구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 2. 연구선·과학기지 활용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연구에 임하고, 공동활용기관의 안전관리 담당자의 안전 지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이 협약의 변경과 해약에 관하여는 공동활용 지침 제12조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다.

제9조(연구개발성과 보고)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을 통한 최종보고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공동활용 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른다.

제10조(지원금·사용료의 계상·지급·사용·관리 및 정산 등) ① 연구선·과학기지 활용을 위해 계상할 수 있는 지원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하여 공동활용 지침 별표1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계상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본 협약에 따라 연구선·과학기지 활용에 소요되는 당해연도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단위 : 원)

연구기관명:		당해 지원금:		지급일:	yyyy.mm.dd
--------	--	---------	--	------	------------

- ③ 전문기관의 장은 본 협약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에 소요되는 사용료를 공동활용기관의 사용료 부과기준 및 공동활용 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활용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단위 : 원)

공동활용기관명:		사용료:	실 소요비*	지급일:	1차	yyyy.mm.dd
					2차	yyyy.mm.dd

* 공동활용기관의 연구선 또는 해양과학기지 사용료 부과기준(내부규정 등) 별첨

-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동활용 지원사업의 추진 목적·성격 및 연구선·과학기지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정부 지원금 또는 사용료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1. 공동활용 연구기간 단축, 연구선·과학기지 활용 불가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2.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정부 지원금 및 사용료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본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
 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원금 관리를 위해 연구기관의 법인계좌를 신규 발급받거나 지정하고 법인계좌가 결재계좌로 등록된 카드를 지정하여 지원금을 집행해야 한다. 다만, 카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의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
-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이 지원금을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집행하였음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발견시점이 연구협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감액 또는 회수
 2. 발견시점이 연구협약기간 종료 후, 정산 전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정산 시 불인정하여 회수
 3. 발견시점이 정산 후인 경우에는 재정산을 실시하여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불인정하여 회수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계상·지급·사용·관리 및 사용내역 정산 등에 관하여는 공동활용 지침 제10조에 따른다.
-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지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비용)를 부득이하게 거래처로 공급가액과 함께 일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지원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이체 즉시 해당 부가가치세를 지원금 관리 법인계좌로 환원 처리해야 한다.

제11조(연구성과의 소유 및 관리) ①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의 소유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성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활용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성과를 공개하고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른 성과조사 및 연구성과 증빙 등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③ 연구성과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동활용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2조(연구성과의 활용·공개) ①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 연구의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홍보,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연구성과가 논문인 경우: “이 연구는 0000년도 해양수산부로부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재원(공동활용 과제번호)의 지원을 받아 (공동활용기관명)의 (연구시설장비명)을/를 활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라는 문구 적시
2. 연구개발성과가 특허인 경우: “이 연구는 0000년도 해양수산부로부터 연구인프라 등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재원(공동활용 과제번호)의 지원을 받아 (공동활용기관명)의 (연구시설장비명)을/를 활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라는 문구 적시

3. 연구개발성과를 언론에 홍보하는 경우: “이 연구는 0000년도 해양수산부로부터 연구 인프라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재원(공동활용 과제번호)의 지원을 받아 (공동활용기관명)의 (연구시설장비명)을/를 활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라는 문구 적시

②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를 공동활용 시스템(<https://badabom.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활용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제13조(정보의 처리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선·과학기지 활용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할 때 이 협약에 따른 다른 당사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는 협약 당사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또는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자메일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주소 또는 전자메일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즉시 나머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14조(인프라 활용의 안전 및 지원 등) ① 공동활용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확보를 위해 연구선·과학기지와 장착된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고, 연구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연구선·과학기지를 활용하는 연구자는 연구선·과학기지에 장착된 연구시설·장비의 망실, 파손 및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선·과학기지 운영 책임자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③ 기상악화, 사고발생 등 천재지변으로 현장에서 연구활동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연구선·과학기지 운영 책임자와 연구자가 상호 협의를 통해 연구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협의가 곤란할 경우 연구선·과학기지 운영 책임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관련 법령등의 준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한 법, 규칙, 규정, 지침에서 규정하고 위임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법, 규칙, 규정 및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21조(부가조건)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및 연구수행에 필요한 특수조건을 기재

예시)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선·과학기지 이용을 위한 해외정부의 승인을 사전에 득해야 한다.

붙임4

연구선 항적도 및 인프라 보유 장비 현황

□ 이사부호

공동활용 인프라명	이사부호		
연간 공동활용 계획	공동활용 운항 항로	공동활용 가능기간 (단독활용)	최대 수용인원
	한국-인도양 이동 (한국~모리셔스)	2026.03.25 - 2026.04.14 (3일 이내)	10명
	인도양	2026.05.20 - 2026.06.16 (3일 이내)	5명
	인도양-한국 이동	2026.06.19 - 2026.07.04 (3일 이내)	10명
	북서태평양 (장목항~괌)	2026.8월 - 2026.12월 (3일이내, 별도 협의)	5명
	선상숙박 가능여부	가능(O)	불가능()
	항적도 (※ 상세내용 바다봄 시스템 참고)		
한국-인도양 이동	인도양	인도양-한국 이동	북서태평양
			
활용 가능 연구시설·장비 현황	기기명	용도	비고
	표층수온염분측정기	해수의 수온, 염분, 수심 측정	해양과기원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iost.ac.kr/lab/sub05_01.do)
	음향측심기	음파를 이용한 수심 정밀 측정	
	다중음향측심기	심해 및 중천해 해저지형 관측	
	천부지층탐사기	해저면 하부 지층정보 수집	
	수층별 수온염분측정기	해수의 수온, 염분, 수심 측정	
	음향 도플러 유속계	음파를 이용한 해류 측정	
	수중위치측정기	수중 장비의 위치 측정	
	어군탐지기	실시간 수심 측정 및 어군 탐지	
	해저영상그래프	카메라를 이용한 해저면 퇴적물 등 채집	
다층플랑크톤채집기 연구용 원치	수층별 생물 채집 연구장비 진·회수		
사용료 및 기타 소요경비	세부내역	기준금액(원)	비고
	사용료	25,000,000/1일	배정일수에 따름
	식대 항비 (입출항 부대비용)	\$29/1일/1인 \$10,000-\$15,000	환율 별도 안내 모리셔스, 괌 등
	국내 장비 선·하적	연구 과제 직접비로 부담	크레인, 지게차, 화물차 등
기타 공동활용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양과기원 연구 과제 수행 해역 또는 이동 항해 해역 내에서 현장조사 가능 2. 항차별 3일 이내 활용 가능(공동활용 가능 기간에서 추가 예정) 3. 사용 기간(일정)과 승선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4.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른 타국 해역 조사계획서 및 공해 조사계획서 등의 작성, 제출의 책임과 의무는 연구자에게 있음 (관련 법에 따라 타국 해역 조사의 경우 10월 이후 조사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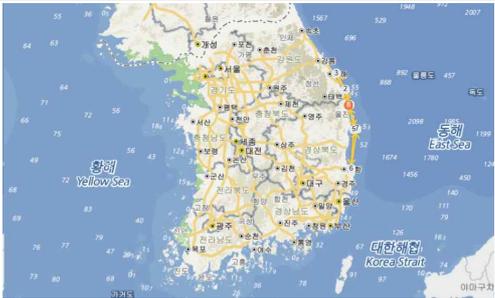
□ 온누리호

공동활용 인프라명	온누리호		
연간 공동활용 계획	공동활용 운항 항로	공동활용 가능기간	최대 수용인원
	동해	연중(별도 협의)	5명
	서해	연중(별도 협의)	5명
	선상숙박 가능여부	가능(O)	불가능()
	항적도 (※ 상세내용 바다봄 시스템 참고)		
	동해	서해	
			
활용 가능 연구시설·장비 현황	기기명	용도	비고
	표층수온염분측정기	해수의 수온, 염분, 수심 측정	해양과기원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iost.ac.kr/lab/sub05_02.do)
	음향측심기	음파를 이용한 수심 정밀 측정	
	다중음향측심기	심해 및 중천해 해저지형 관측	
	천부지층탐사기	해저면 하부 지층정보 수집	
	수층별 수온염분측정기	해수의 수온, 염분, 수심 측정	
	음향 도플러 유속계	음파를 이용한 해류 측정	
연구용 원치	연구장비 진·회수		
사용료 및 기타 소요경비	세부내역	기준금액(원)	
	사용료	13,000,000원/1일	
	식대	19,000원/1일/1인	
	장비 선·하적	연구 과제 직접비로 부담	
기타 공동활용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출항일포함 운항기간 총 3일 이내시 단독 활용 가능 2. 활용 기간은 모항(장목항) 출항일부터 입항일까지이며, 총 활용 기간 기준으로 사용료 정산, 활용 중 모항 외 지역에서 피항시에도 사용료 발생 (9,100,000원/1일) 3. 3일 이상의 경우, 해양과기원 연구 과제와 동승, 동승시 배정일수에 따라 사용료 정산 4. 동승시 해양과기원 연구 과제 수행 인근 해역 내에서 현장조사 가능 5. 배정 일수와 승선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6. 관측장비 직접 운용(운항 전 장비 운용 교육 별도 시행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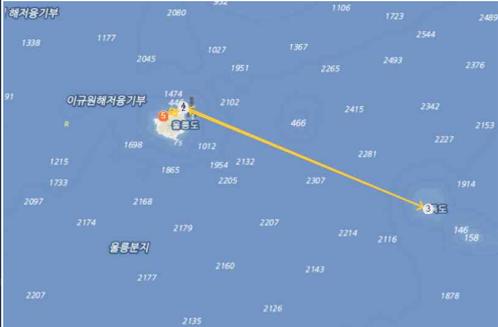
□ 장목 1호

공동활용 인프라명	장목1호		
연간 공동활용 계획	공동활용 운항 항로	공동활용 가능기간	최대 수용인원
	동해(거제~포항)	연중(별도 협의)	11명
	남해(거제~완도)	연중(별도 협의)	11명
	선상숙박 가능여부	가능()	불가능(O)
	항적도 (※ 상세내용 바다봄 시스템 참고)		
	동해(거제~포항)		남해(거제~완도)
			
활용 가능 연구시설·장비 현황	기기명	용도	비고
	표층수온염분측정기	해수의 수온, 염분, 수심 측정	해양과기원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iost.ac.kr/lab/sub05_04.do)
	다중음향측심기	심해 및 중천해 해저지형 관측	
	천부지층탐사기	해저면 하부 지층정보 수집	
	수층별 수온염분측정기	해수의 수온, 염분, 수심 측정	
	음향 도플러 유속계	음파를 이용한 해류 측정	
연구용 원치	연구장비 진·회수		
사용료 및 기타 소요경비	세부내역	기준금액(원)	비고
	사용료	2,000,000원/1일 단독활용	식대 불포함
	장비 선·하적	연구 과제 직접비로 부담	크레인, 지게차, 화물차 등
기타 공동활용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측장비 직접 운용(운항 전 장비 운용 교육 별도 시행 필수) 2. 활용 기간은 모항(장목항) 출항일부터 입항일까지이며, 총 활용 기간 기준으로 사용료 정산, 활용 중 모항 외 지역에서 피항시에도 사용료 발생 (1,400,000원/1일) 3. 일출 후 출항~일몰 전 입항(09시~18시 기준) 4. 조사 해역 인근 접안 가능 선석(부두) 없을 경우 활용 불가 		

□ 장목 2호

공동활용 인프라명	장목2호		
연간 공동활용 계획	공동활용 운항 항로	공동활용 가능기간	최대 수용인원
	동해(죽변~포항 / 죽변~속초)	연중(별도 협의)	8명
	울릉도(죽변~울릉)	연중(별도 협의)	8명
	선상숙박 가능여부	가능()	불가능(O)
	항적도 (※ 상세내용 바다봄 시스템 참고)		
	동해(죽변~포항/죽변~속초)	울릉도(죽변~울릉)	
			
활용 가능 연구시설·장비 현황	기기명	용도	비고
	표층수온염분측정기	해수의 수온, 염분, 수심 측정	해양과기원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iost.ac.kr/lab/sub05_05.do)
	다중음향측심기	심해 및 중천해 해저지형 관측	
	천부지층탐사기	해저면 하부 지층정보 수집	
	수층별 수온염분측정기	해수의 수온, 염분, 수심 측정	
	음향 도플러 유속계	음파를 이용한 해류 측정	
연구용 원치	연구장비 진·회수		
사용료 및 기타 소요경비	세부내역	기준금액(원)	비고
	사용료	2,000,000원/1일 단독활용	식대 불포함
	장비 선·하적	연구 과제 직접비로 부담	크레인, 지게차, 화물차 등
기타 공동활용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측장비 직접 운용(운항 전 장비 운용 교육 별도 시행 필수) 2. 활용 기간은 모항(죽변항) 출항일부터 입항일까지이며, 총 활용 기간 기준으로 사용료 정산, 활용 중 모항 외 지역에서 피항시에도 사용료 발생 (1,400,000원/1일) 3. 일출 후 출항~일몰 전 입항(09시~18시 기준) 4. 조사 해역 인근 접안 가능 선석(부두)없을 경우 활용 불가 		

□ 독도누리호

공동활용 인프라명	독도누리호			
연간 공동활용 계획	공동활용 운항 항로	공동활용 가능기간	최대 수용인원	
	울릉도 연안	연중(별도 협의)	15명	
	울릉~독도	연중(별도 협의)	15명	
	선상숙박 가능여부	가능()	불가능(O)	
	항적도 (※ 상세내용 바다봄 시스템 참고)			
	울릉도 연안	울릉~독도		
				
활용 가능 연구시설·장비 현황	기기명	용도	비고	
	표층수온염분측정기	해수의 수온, 염분, 수심 측정	해양과기원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iost.ac.kr/lab/sub05_04.do)	
	수층별 수온염분측정기	해수의 수온, 염분, 수심 측정		
	음향 도플러 유속계	음파를 이용, 수층별 해류 속도 측정		
	음향 측심기	음파를 이용, 해저 수심 측정		
연구용 원치	연구장비 진·회수			
사용료 및 기타 소요경비	세부내역	기준금액(원)	비고	
	사용료	1,500,000원/1일 단독활용		식대 불포함
	유류비	실비		사용기간 중 유류소모량에 따름
장비 선·하적	연구 과제 직접비로 부담		크레인, 지게차, 화물차 등	
기타 공동활용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측장비 직접 운용(운항 전 장비 운용 교육 별도 시행 필수) 2. 활용 기간은 모항(현포항) 출항일부터 입항일까지이며, 총 활용 기간 기준으로 사용료 정산, 활용 중 모항 외 지역에서 피항시에도 사용료 발생 (1,050,000원/1일) 3. 일출 후 출항~일몰 전 입항(09시~18시 기준), 독도 조사 별도 협의 4. 독도의 경우, 당일 조사만 가능(왕복 이동 약 6시간 소요) 			

□ 아라온호

공동활용 인프라명	새빙연구선 아라온		
	공동활용 운항	공동활용 가능기간 (단독활용일수 별도협의 필요)	최대 수용인원
연간 공동활용 계획	2026/27년 남극항해 (이동항해; 인천~리틀톤)	2026.10.30. - 2026.11.19.	10명
	2026/27년 남극항해 (1항차)	2026.11.19. - 2026.12.22.	3명
	2026/27년 남극항해 (2항차)	2026.12.22. - 2027.02.23.	2명
	[참고] 2026/27년 남극항해 (3항차)	2027.02.23. - 2027.03.28.	2명
	[참고] 2026/27년 남극항해 (이동항차-귀국)	2027.03.28. - 2027.04.17.	10명
	선상숙박 가능여부	가능(V)	불가능()
	항적도 (※ 상세내용 바다봄 시스템 참고)		
	2026/27년 남극항해 (이동항차)	2026/27년 남극항해 (1항차)	2026/27년 남극항해 (2항차)
			
	활용 가능 연구시설·장비 현황	No	기기명
1		LAN System	자료공유 및 인터넷
2		Multi-Beam Echo Sounder (DEEPWATER)	음파를 이용하여 수심 측정
3		Sub-Bottom Profiler	퇴적물의 구조와 두께 측정
4		Compressor System	압축공기 생성
5		Marine Gravity Meter	중력측정
6		Attitude and Positioning System	음향장비의 위치 및 자세보정
7		Satellite Receiver	대기, 해양 등 분석처리
8		Precision Depth Recorder	보다 정밀한 수심측정
9		Giant Piston Corer (including Side A-Frame)	35m 깊이 해저지질시료 채취
10		Acoustic Current Doppler Profiler (HULLMOUNTED)	유속측정
11		Scientific Fish Finder	어류탐지
12		Low Fre. Omni-directional Fishery Sonar	전 방위 어류탐지
13		LIDAR	대기경계층구조 분석
14		Sea Water Analyzer	연속 습식 화학분석
15		pCO2 System	해수면 온도, 염분도 측정
16		Side A-Frame	Giant Piston Corer와 연계되어 사용
17		Acoustic Synchronizer System	음향장비의 간섭제거
18		ITRAX Core Scanner	입자단면 측정
19	Aerosol Sizing Instrument	대기에어로졸크기 측정	

20	Multi-Channel Seismic System	해저지질구조를 밝힘	
21	Aerose Mass Spectrometer	대기 에어로졸 측정	
22	KONMAP System	항해 및 기관부분 관측	
23	MDM System	자료수집	
24	Underwater Undulating Instrument System	수중 파동운동 계측 장비	
25	Expandable Bathy Thermograph (X-BT)	음속보정	
26	Fast Response CO2/H2O Analyzer	이산화탄소/수증기 플럭스 측정	
27	Continuous Plankton Recorder	각종 플랑크톤 기록	
28	Lowered Acoustic Current Doppler Profiler	CTD에 부착되어 유속측정	
29	GC/MS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	
30	Nephelometer	에어로졸 산란계수 측정	
31	Salinometer	염분측정	
32	Marine Magnetometer	자력측정	
33	Wavemeter	파고측정	
34	Condensation Particle Counter Bank	미소입자 관측	
35	Aethalometer	실시간 분석된 탄소 관측	
36	RMt	전도, 온도, 깊이, 염류소 등 측정	
37	ProtonTransferReactionMassSpectrometer	대기중 유기화합물 측정	
38	선수대기과학 실험용 컨테이너	대기과학정비 보관	
39	CTD	전도도, 온도, 깊이측정	
40	MOCNESS	실시간 염분, 온도측정	
41	CO Analyzer	대기중 일산화탄소 분석	
42	High Speed Centrifuger	혼합물 분리	
43	Planetary Ball Mill	분말시료 제작	
44	TV Grab	원격제어로 해저질 채취	
45	Hg Analyzer	대기 중 수은량 분석	
46	NO Analyzer	대기 중 이산화/이산화질소 측정	
47	Oscilloscope	시간당 변하는 신호관측	
48	Digital Multimeter	전압/전류/저항 등 측정	
49	Power Supply	전압공급	
50	PrecisionLCRMeter	주파수를 이용한 정밀 저항 측정	
51	Precision Impedance Analyzer	정밀저항 분석	
52	Universal Counter	주기를 이용한 주파수측정	
53	Pulse Generator	전기신호(파형)발생	
54	Light Microscope	표본감찰	
사용료 및 기타 소요경비	세부내역	기준금액	비고
	아래온 선박 사용료 (단독활용시)	25,000,000원 / 1일	
	아래온 선박 사용료 (이동항해 경로상)	12,500,000원 / 사용일 무관	
	식대	별도 징구 없음	
연구 장비사용료	별도 사용료 없음	장비관리자와 사전 협의 필요	
기타 공동활용 조건	1. EEZ 조사 시 해당국가 입국허가 필수 2. 개인 연구장비 탑재 및 활용 불가 3. 헬기활용 필요시 사전 협조 요청 필요(시간당 헬기 사용료 있음)		

□ 남극 세종 과학기지

공동활용 인프리명	남극세종과학기지		
활용 가능 연구시설·장비 현황	No	기기명	용도
	1	Meteor Radar	고층대기 유성 관측
	2	All-sky camera	대기광과 오로라 관측을 위한 장비
	3	GPS-TEC Scintillation Monitor	전리권 영역 전자기동밀도 관측
	4	Fabry-Perot Interferometer	극지 열권-전리권 관측
	5	Condensation Particle counter	에어로졸 농도 측정
	6	Scanning Mobility Particle Sizer	에어로졸 크기 분리 측정
	7	Cloud Condensation Nuclei Counter	구름응결핵계수기
	8	High Volume Sampler	대용량입자포집기
	9	OPC (Optic Particle Counter)	에어로졸 크기분포 관측
	10	자동기상관측장비 (AMOS-1, AMOS-3, AMOS-3b)	자동기상관측시스템
	11	고속원심분리기	물질 구성 원심 분리
	12	Spectrophotometer	시료 색채 측정
	13	Shaking incubator	배양기
	14	Aethalometer	블랙카본 농도 관측
	15	공동감쇄분광기(CRDS)	대기성분 측정
	16	대기라돈가스 검출기	대기 중 라돈 농도 측정
	17	O3 analyzer	오존 농도 측정
	18	NOx analyzer	질소산화물 측정
	19	SO2 analyzer	황산화물 측정
	20	지진계	초 광대역 지진계
	21	질소생성기	액체질소생성기
	22	Deep freezer	초저온 냉동고
	23	광학현미경 및 해부현미경	물질 관찰
	24	pCO2 analyzer	pCO2 분석
25	CTD	전도도, 온도, 깊이 측정	
※ 기지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사용료 및 기타 소요경비	세부내역	기준금액(원)	비고
	항공료 (한국 - 칠레)	- 7,000,000원/1인/왕복	미국, 프랑스 경유 기준
	대륙간 항공료 (관문도시 - 남극)	- 2,850,000원/1인/편도	탑승인원,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출장비 (숙박, 식비, 일비)	- 경유지(파리, 미국, 칠레 산티아고 체류 시) - 칠레 폰타아레나스 체류 (입·출남극 전 각 2일)	소속기관의 지침에 따름
	세종기지 체류	- 숙박비, 식비 발생 없음	
화물운송비	- 해상운송(칠레→한국, 부피 1M3 기준): 상온물품 약 400,000원, 냉동물품 3,500,000원 - 항공운송(한국→칠레): 약 40,000원/Kg - 항공운송(기지→칠레): USD 20/Kg - 통관수수료, 내륙운송료 등 별도 발생	발생 시 (물품가액,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공동활용 가능일수 및 수용 인원	공동활용 가능기간		최대 수용인원
	2026.12월 초 ~ 2027.2월 말		8명, 1인 3주 내외
기타 공동활용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종기지 해상활동을 위한 고무보트, 소형선박 활용 가능 2. 설상차/고무보트/소형선박 : 수요조사 및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사용시간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설상차는 지면에 눈이 있는 시기인 하계 초반(12월)에만 운영 가능) 3. 외교부 남극활동허가 승인 필요 (극지연구소에서 취합 후 일괄 발송) 4. 극지활동 시행 전 극지안전훈련, 건강적합성판정 자료 제출 필요 5. 극지활동을 위한 안전피복 대여 가능 		

□ 태평양 해양과학기지(Korea 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공동활용 인프라명	태평양해양과학기지(Korea-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KSORC)		
활용 가능 연구시설·장비 현황	기기명	용도	비고
	라군드림(13톤)	환초외각 해양조사	15.1m, 14명 승선
	라군엔젤(3톤)	환초내 조사	9.5m, 10명 승선
	반디호(1톤)	환초내 조사	8m, 6명 승선
	현미경	시료관찰	
	초저온냉동고	시료보관	
	원심분리기	시료성분분리	
	열풍건조기	시료건조	대형시료 등
	고압멸균기	시료멸균	
	드라이오븐	시료건조	Filter paper 등
사용료 및 기타 소요경비	세부내역	기준금액(원)	비고
	라군드림	\$1,000 (유류비, 8l/km)	-유류비 실비정산 -주말 및 공휴일 직원 인건비 발생(\$24/일/인) ※ 직원별 시급이 상이함. 산출 시 고용계약서상 개인별 시급 기준으로 적용
	라군엔젤	\$500 (유류비, 4l/km)	
	반디호	\$200 (유류비, 2l/km)	
	숙식비	116,000원	
기타 공동활용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활동에 대한 KSORC 및 Chuuk State Government와 사전 조율 필요 * KIOST & Chuuk Government MOU 갱신에 따른 생물자원 주권 강화 2. 연구결과 데이터는 반드시 KSORC와 Chuuk State Government와 공유되어야 하며, 연말 brief report 제출 필요 * Report 미제출 시, 향후 연구활동 제한 3. 연구결과를 활용한 논문 작성시 KSORC와 Department of Marine Resource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4. 휴일 외부연구 활동 시 사전 협조 필요(직원 휴일 추가 인건비 발생) 		



선명	기본사용료 (\$/일)	유류대 및 엔진오일 (실비정산)	인건비 (8시간 기준/ 주말 및 공휴일에 한함)
	원외		
라군드림호	1,000	8l/km	\$24/일/인
라군엔젤호	500	4l/km	\$24/일/인
반디호	200	2l/km	\$24/일/인
소형보트	0	0	\$24/일/인

□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공동활용 인프라명	한·인니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Korea-Indonesia Marine Technology Cooperation Research Center, MTCRC)		
활용 가능 연구시설·장비 현황	기기명	용도	비고
	ARA호	연안해양조사	12m, 10명 승선, 15노트
	음향도플러유속계(ADCP)	수중유속측정	
	수심수온염분기록계 (CTD)	수중 수온, 염분 등 측정	
	채수기(water sampler)	생화학 분석 등을 위한 채수	
	다이빙장비(diving gear)	연안 수중관측을 위한 잠수장비	
	다중음향측심기 (MBES, Multi-Beam Echo Sounder)	수심측정	
	해저표층탐사기 (SBP, Sub-Bottom Profiler)	해저표층 퇴적물의 성층구조 조사	2-18 KHz
	위성측위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위성기반 위치 측정시스템	
	드론(Drones)	드론활용 원격관측시스템	
	동결건조기(Freezer Dryer)	시료 건조	
	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빛 투과를 통한 물질분석	
사용료 및 기타 소요경비	세부내역	기준금액(원)	비고
	ARA호	1,500,000원	유류비, 선장 및 선원인건비, 항구 사용료 등 포함 1일 기준 사용료 (관측장비 500,000, 시료분석 600,000 등은 요청시 별도 부과)
기타 공동활용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활동에 대한 사전 허가 필요(최소 2~3개월 소요) *민감한 연구내용 포함시 불허될 수 있음 2. 연구결과 데이터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공유되어야 함 3. 연구결과로 인한 논문 작성시 MTCRC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4. 인도네시아 정부 연구허가수수료 최대 600,000 추가 발생 5. 기지 내 숙박 및 식사 제공사항 없음 		

□ **웅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p>공동활용 인프라명</p>	<p>웅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Ongjin Sochengcho Ocean Research Station)</p>		
<p>활용 가능 연구시설·장비 현황</p>	<p>기기명</p>	<p>용도</p>	<p>비고</p>
	<p>※ 기지 소유 연구시설 및 장비 없음</p>		
<p>사용료 및 기타 소요경비</p>	<p>세부내역</p>	<p>기준금액(원)</p>	<p>비고</p>
	<p>※ 기지 입도(인천→기지)를 위한 선박 사용료 발생</p>		
<p>기타 공동활용 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웅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연구팀의 입도인원 전원은 해양과학기지 체류자 기초안전교육(해양수산연수원)을 이수하고 웅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입도 전 유효기간 이내(교육일로부터 2년)교육수료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체류자 기초안전교육 '26년 수요조사 예정 2. 웅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지원자가 보유 또는 임차한 연구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활용 지원 시 제출한 장비 외에 추가나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신청하고 최종여부는 국립해양조사원의 협의를 통해 확정 * 해양과학기지의 안정적인 전력운영에 따른 사용장비의 총 전력사용량을 제한(최대 부하 5kW이하), 사용전압(220V) 이외의 장비사용 시 별도의 변압기 필요 3. 지원자는 연구에 필요한 물품(시료 채수기, 시약 등)과 해양과학기지 체류에 필요한 물품(침구류, 개인 세면도구 등)은 직접 구비하여야 함 4. 개인실험실 및 1인1실 숙식은 제공되지 않으며, 숙식은 8명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함 5. 웅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의 체류여건 및 장비운영은 해양과학기지 유지관리 사업 수행사의 지도하에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6. 음주 및 낚시 등 개인 취미활동은 일체 불가하며, 기타 해양과학기지 이용 중 지원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국립해양조사원의 손해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연구과제가 취소 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지원자는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과학기지 관리·운영규정 별표1의 체류자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함 		